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합50154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20020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가합501546 판결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4. D

5. 주식회사 E

6. F 주식회사

7. G

변론 종결2014. 7. 22.(피고 A 주식회사, B, C, D)

2014. 11. 6.(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판결 선고2014. 12. 11.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17,546원 및 그 중 276,145,190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962,098,171원에 대하여는 2013. 3. 21.부터 각 2014. 4. 1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1)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2012. 1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295,218,750원의,

2)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2012. 1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69,791,666원의,

3)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G 사이에 2012. 1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36,989,584원의

각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E는 295,218,750원, 피고 F 주식회사는 69,791,666원, 피고 G은 36,989,5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보증날짜'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의

아래 채권자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각 약정의 보증한도 및 보증기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 변경되었다.

1	2006-12-08	중소기업은행	136,000,000	127,500,000	2007-12-07	2013-11-29
2	2008-01-11	342,000,000	290,700,000	2009-11-10	2013-11-08	
3	2009-06-12	300,000,000	300,000,000	2010-06-01	2013-06-07	
4	2010-05-07	240,000,000	240,000,000	2011-05-06	2013-05-03	
5	2011-08-24	국민은행	272,000,000	272,000,000	2012-08-24	2013-08-23

나. 피고 A, B, C, D은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다. 피고 A이 2013. 1. 17.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대출금에 대한, 2013. 1. 25. 아래 표 순번 제5번 기재 대출금에 대한 각 이자 등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채권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아래 표 순번 제1번 기재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2013. 4. 4.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1,772,600원을 지출하였다.

1	2006-12-08	중소기업은행	2013-03-21	127,500,000	1,187,012	128,687,012	2013-03-21 2013-04-02	4,659,520 12,670	124,014,822
2	2008-01-11	290,700,000	2,364,891	293,064,891		293,064,891			
3	2009-06-12	300,000,000	2,734,027	302,734,027		302,734,027			
4	2010-05-07	240,000,000	2,284,431	242,284,431		242,284,431			
소계	958,200,000	8,570,361	966,770,361	4,672,190	962,098,171				
5	2011-08-24	국민은행	2013-03-19	272,000,000	4,145,190	276,145,190		276,145,190	
합계	1,230,200,000	12,715,551	1,242,915,551	4,672,190	1,238,243,361				

[인정근거] 피고 A,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피고 E, F, G: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잔여 구상금 1,238,243,361원,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1,585원[= 4,659,520원 × 연 12% × 1일(2013. 3. 21.)/365일 + 12,670원 × 연 12% × 13일(2013. 3. 21.부터 2013. 4. 2.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 채권보전비용 1,772,600원 합계 1,240,017,546원 및 그 중 위 1의 다항 기재 표 제5번 기재 구상금 276,145,19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3. 19.부터, 같은 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잔여 구상금 962,098,171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3.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송달일인 2014. 4. 1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0 내지 16호증, 을마 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부천시 소사구청장, 안성시장, 주식회사 센트랄디티에스(이하 '센트랄디티에스'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A,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① 피고 A은 2012. 6. 21. H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2.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B은 2012. 6. 21. H로부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2. 9. 20.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가) 피고 주식회사 E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E에게 ① 2012. 12. 11.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4,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2012. 12. 11., 잔금 6억 4,600만 원은 2013. 1. 25.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2013. 1. 3.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피고 E는 2013. 1. 9.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매매대금 중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F 주식회사

(1) 피고 A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로부터 드릴 등 금속절삭공구를 납품받아오다 미수금채권이 1억 원을 초과하자,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 F에게 ① 2012. 12. 11.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3. 1. 25.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 3. 이 사건 제4, 5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지분전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피고 F은 2013. 1. 10.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2 매매대금 중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G

피고 B은 피고 G에게 ① 2012. 12. 11. 이 사건 제6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8,100만 원은 2013. 1. 25.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2013. 1. 3.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2.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3. 1. 9.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0. 이 사건 제4, 5,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말소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7억 5,000만 원이었다.

4) 피고 A, B의 재산상태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당시 피고 A, B의 감정평가액 또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피고 A	1	안성시 공장용지 3,719m ²	1,000,411,000	1	중소기업은행	2,746,000,000
2	안성시 J지상공장	323,162,360	2	국민은행	462,000,000	
위 공장부지 내 기타 건물	14,160,000	3	서울보증보험	138,000,000		
위 공장 내 기계·기구	174,280,000	4	두산캐피탈	269,000,000		
소계	1,511,813,360	5	농협은행	750,000,000		
3	안성시 K 공장용지 1,239m ² , L	658,991,000	합계	4,365,000,000		

피고 A	1	안성시 공장용지 3,719m ²	1,000,411,000	1	중소기업 은행	2,746,000,000
	대 1,164m ² , M 잡종지 529m ² , N 대 555m ²					
4	안성시 L지상공장, N M지상공장 위공장부지 내 기타 건물 위공장내 기계·기구소계	201,387,20095,950,00010,570,000966,898,200				
합계	3,524,711,					

피고 A	1	안성시 공장용지 3,719m ²	1,000,411,000	1	중소기업은행	2,746,000,000
	560					
피고 B	1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108동 1404호	260,000,000	1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242,915,551
2	이 사건 제 6 부동산	106,000,000				
합계	366,000,000	합계	1,242,915,551			

나) 한편, 피고 A은 2012. 4.경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거래처인 센트랄디티에스로부터 수차례 물품대금을 선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음에도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2012. 12.경 거래를 종료하였고, 2012. 7.경부터는 산재·고용보험료 등을 연체하였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이전부터 산재·고용보험료를 연체하며, 센트랄디티에스, 피고 F에 대한 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3. 1. 17.경 대출금 이자의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정도 지난 2013. 3. 19.과 2013. 3. 21.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을마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2012. 6. 21.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위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매매예약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A과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마 3호증(합의서)은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인 B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② 설령 을마 3호증의 기재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고 A이 피고 E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그 매매대금을 상호 협의 후 확정한다고 되어 있어, 그 매매예약은 매매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어서 위 매매예약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여금 채권자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한편, 대물변제조로 위 부동산을 제공한 행위와 물품대금 채권자인 피고 F에게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제공한 행위, ②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G에게 이 사건 제6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모두 피고 A, B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E, F, G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라. 피고 E, F, G의 선의 여부

1) 피고들의 항변 피고 E는 군산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공장부지로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고, 피고 F은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물품대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을 제공받았으며, 피고 A의 보증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 F, G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의사 또는 수익자의 이에 대한 악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이전에 피고 A이 피고 E에 대하여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피고 F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B의 일부 증언과 피고 E, F이 피고 A에 대한 채권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 E, F, G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위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았고 실제 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불과 약 2주일 후에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매매계약 체결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가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그 시가와 차이가 크지 않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 E는 피고 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당시 매매대금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피고들의 각 대표이사가 서로 대학 동문으로 2004년경부터 교류해 오면서 피고 B이 피고 E의 감사로도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F은 피고 A과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에 비추어, 위 피고들은 피고 A의 재산상태를 의심할 수 있었고 다른 일반채권자의 존재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안분한 금액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 9.과 2013. 1. 10.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위와 같은 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동되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위 공동담보가액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은 위 공동담보가액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이 사건 제1,2,3 부동산	846,000,000	550,781,250	295,218,750
2	이 사건 제4,5 부동산	200,000,000	130,208,334	69,791,666
3	이 사건 제6부동산	106,000,000	69,010,416	36,989,584
합계	1,152,000,000	750,000,000	402,000,000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295,218,750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69,791,666원, 이 사건 제3 매매계약은 36,989,584원의 각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도는 295,218,750원, 피고 F은 69,791,666원, 피고 G은 36,989,5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영재

판사정종륜

판사봉지수

별지